

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명	전화번호	
	소재지(사업장)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조직·인력·시설·장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최근 2년간 녹색화학분야 연구실적 1부. 3.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처리기관
	기후에너지환경부

지정신청서 작성	⇒	접수	⇒	검토	⇒	결재	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신청인